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은 지난 2월 1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자대학교 최일섭 교수는 “전국적으로 4,640여개 사회복지시설에서 44,33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분보장 및 복지혜택에 대한 법적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여 사회복지시설직원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직원의 신분 및 최저보수수준을 정함으로 신분 안정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교남소망의집 윤덕찬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접근이 아닌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명확한



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또 보수교육의 법제화와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직능단체 중심으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 교육 훈련을 강화할 것”을 제안

해 참석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3백여명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높은 호응도 속에 진행되었다. 

## 사회복지사 처우

# 법개정 통한 근거 마련 한목소리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에 동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보조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구분해 인건비는 표준화된 지급 기준에 의해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운영비는 시설유형과 사업량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윤 사무국장은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 보장을 위한 보수교육 규정화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한편 정부측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권덕철 팀장은 어려움은 알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고민 중이라는 말로 사업법 개정에 대한 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중 일부

**제35조의3(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계획 수립 시 행정자치부장관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의4(실태조사)**

-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

자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시설종사자의 보수 및 제수당 지급)** 시설종사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종 및 직급별 최저 보수 기준
- 2. 각종 제수당의 지급 기준 및 지급 방법